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안전투자 및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고,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규정이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요건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규정·운영중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안전투자 여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기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

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허취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잠식 지속 기간을 “3

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안 별표3)

다.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6. 30. ~ 8.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국제(여객) 항공운송사업자 자본금 상향)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150억원”을 “2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란 카목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61조제12항(법 제60조제10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 2항제14 호	400	500	5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223